

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제출일 : 2023. 7. .

1. 제안이유
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(안 제4조~안 제5조)
- 보호시설의 설치 및 업무(안 제6조~안 제7조)
- 보호비용의 지원(안 제8조)
- 비밀 엄수의 의무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·보호 등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※ 【참고】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
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
7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